

[일반공급] 사전당첨자 서류제출 안내

■ 서류접수 일정 및 장소

구분	서류제출 방문예약 기간	서류제출 기간	서류제출 장소
사전당첨자 서류제출 안내	2022년 04월 05일(화) ~ 2022년 04월 11일(월)	2022년 04월 06일(수) ~ 04월 11일(월)	오산 세교2지구 힐데스하임 현장접수처 (주소 : 경기도 오산시 늑새로 8-26, 1층 101호(누움동))
	「오산 세교2지구 힐데스하임」 홈페이지 사전당첨자 구비서류 제출 방문예약 진행		

■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

구분	제출유형		구비서류	발급기준	비고
	필수	추가			
공통서류	○		서약서	본인	• 현장접수처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 : 본인발급용만 인정 • 본인서명확인서 제출 가능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• 여권(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 포함)	본인	•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확인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.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전체 포함'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 포함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전체 포함'으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(전체 포함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발급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전체 포함'으로 발급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만 30세 미만의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배우자 관한사항 혼인/이혼 사항 확인, '상세'로 발급
가점제 당첨 해당자 추가서류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(정부24에서 발급가능) 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7항에 의거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입증서류 참조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•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혼인 또는 이혼에 관한 사항 확인, '상세'로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'상세'로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피부양 직계존·비속	• 직계 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※ 직계존속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-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: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-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 :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•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(정부24에서 발급가능)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전체 포함)	피부양 직계비속	• 만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1년이상 부양가족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전체 포함'으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전체 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•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한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전체 포함'으로 발급
		○	1주택 처분 약속서	본인	• 현장접수처 비치(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)
제3자 대리인 추가서류		○	위임장 및 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		• 현장접수처 비치
		○	대리인 신분증	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
기타		○	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		•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자료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(2022.03.18.)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.
 ※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적격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,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, 상황에 따라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※ 사전서류 접수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, 계약 시 구비서류로 같음하며, 상기 서류 외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※ 모든 서류는 '상세표기'로 발급하여 제출바랍니다.